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가. 시설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1)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2)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별지 제1호 서식)

3. 계약기간

가.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시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설의 의무

가.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마.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분신,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

- (1)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 자료 참조)
-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5)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나. 본인부담금

-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면제 0%
- (3)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다.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바.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사.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이용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3)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자제)
-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 (5)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건강상태, 생활환경변화, 신상 변화 등을 시설에 제공할 의무
- (6)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7) 이용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8)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시설에 알릴 의무

9.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 (2) 이용자의 타 시설 이전 또는 사망

나.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 (4) 고의적으로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다. 계약해지 처리된 후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시설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시설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마.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11.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가. 이용자의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다.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고의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라.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마.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바. 요양보호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시설은 배상 책임이 없다.

아. 특이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히 규명하여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 .1.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